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2. 19 선고 2020가단526943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

대한민국

피 고

AAA

변 론 종 결

무변론

판 결 선 고

2021. 2. 19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. x. xx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